

## 부산직할시남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 보고서

1993. 12. 21.  
總務委員會

###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3년 12월 17일 남구청장 제출

나. 회부 일자 : 1993년 12월 20일

다. 상정 일자 : 1993년 12월 21일 상정

(제27회 남구의회 정기회 총무위원회 제7차 회의)

### 2. 제안설명 요지(재무과장 유용현)

가. 제안 이유

현재 부산직할시 남구 물품 관리 조례 제9조 제1항에 의해 정수 관리 물품은 의회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는 것이 예산 승인시 증복으로 의회 의결을 받는 등 업무의 번잡성이 있어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 골자

정수 관리 물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 물품을 매입토록 하여야 한다는 규정 삭제(조례 제9조)

### 3. 전문위원 검토 보고 요지(전문위원 이무상)

○ 종전의 지방재정법 제113조 제2항의 규정에 보면 정수 관리의 대상인 물품의 취득 처분에 대하여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음.

부산직할시 남구 물품 관리 조례 제9조 제1항에서도 정수 관리 대상인 물품에 대하여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 물품을 매입토록 규정되어 있음.

- 그간의 운영 과정에서 보면 정수관리대상의 물품의 경우 당초 본 예산 또는 추경시에 의회에서 예산안을 승인받고 또 중복으로 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등 오히려 업무의 번잡으로 인한 업무 복잡으로 행정 능률의 저해 요인으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었음.
- 93.9.29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제113조 2항(정수관리의 대상인 물품의 취득 처분에 대하여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을 삭제하였음.
- 따라서 부산직할시 남구 물품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 제9조 제1항의 정수관리 대상인 물품의 경우 의회 의결을 얻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개정된 본 조례의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시행령과의 균형을 맞추코자 하는 것으로 이는 적법 적정한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답변 요지 : 없 음

5. 토론 요지 : 없 음

6. 심사 결과 : 원안 가결

7. 소수 의견 요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